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915
----------	-----

제출연월일 : 200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농어촌 주민의 약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되고 시설의 운용·관리 미흡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있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함(안 제5조 및 제6조).
-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안 제9조).
-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수도법 제3조제9호, 제7조, 제13조2호,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32조, 제38조2호
- 수도법시행령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 $680,000\text{원/년} \times 16\text{개소} = 10,880\text{천원/년}$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0. 9. 7 ~ 2000. 9. 27(20일간)

참고자료 : 별첨

-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 표준조례안 (경기도)
- 안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시장을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는 당해 지역의 사용자협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협회”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회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운전·개수·보수 및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상수원관리 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그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보수의 사유, 범위, 사업기간,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홍수·지진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수량고갈, 시설의 이용저조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 의견 반영하여야 하며, 안산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 (관리비용) ①간이급수시설중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5조 (사용자협의회) ①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⑤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회)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협의회의 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보상) 시장은 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시장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6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이를 할 수 있다.

제20조 (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유지·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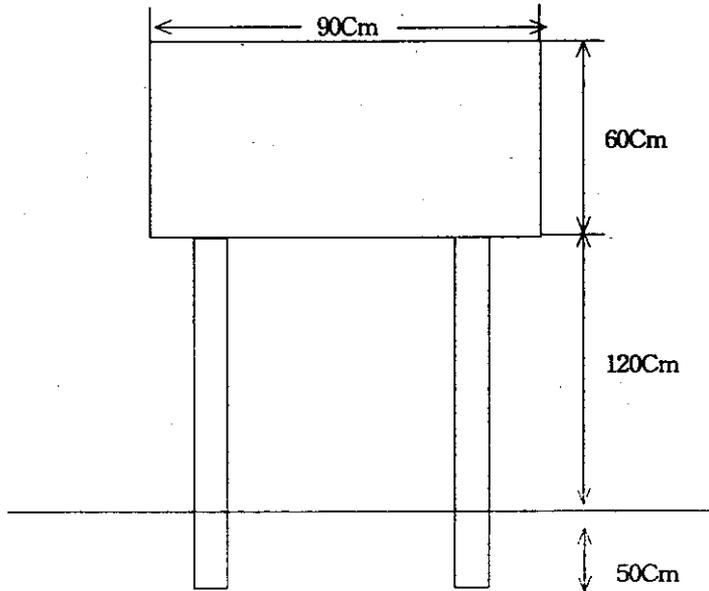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안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		상수도사업소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수도시설과 신현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급수담당 이성원
자	담당자 성명·전화	신현철 (행정 2462)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4조제1항 관련)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10mm 내외의 철판
바탕 색 : 흰색
글씨 : 청색

○ 내용문

알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시

연락처 : 안산시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전화 : ()

[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대장

(제6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안산시 제 호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 직 : 성명 :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 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기 타 (대지위치)			

[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

(제6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안산시 제 호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 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 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기 타 (대지위치)			

안산시간이상수도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15
----------	-----

제안년월일 : 2000. 11. 7.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의4인

1. 수정이유

-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12조 제1항중 “간이 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로 수정함.(안 제12조)
- 제16조 제목 “협의회”를 “협의회기능”으로 수정함.

안산시간이상수도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간이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협의회)”를 “(협의회기능)”으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생략)</p> <p>제16조(협의회)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5.(생략)</p>	<p>제12조(요금징수) ①.....간이상수도..... ②(원안과 같음)</p> <p>제16조(협의회기능) 1.~5.(원안과 같음)</p>